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5-60
----------	-------

제출년월일 : 95. 12.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안)

1. 제안이유

- 자치구의회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정원이 승인되고 관련직급 및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95년 12월 26일자로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되므로써 관련조례인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2. 관련근거

- 기획12200-1085(95. 12. 19) 자치구의회 「사무과」의 「사무국」 정원승인

3. 주요골자

-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자구 수정함(안제2조)
-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자구 수정함(안제4조, 제6조, 제8조)
-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자구 수정함(안제5조)

4. 거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 제3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조중 (별표) 공인의 규격 제4호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중 “의회사무과에서”를 “의회사무국에서”로 한다.

제4조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중 “사무과장에게”를 “사무국장에게”로 한다.

부 칙

제1항(총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정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구광역시달서구 <u>의회사무과장</u>	3 <u>의회사무국장</u>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u>의회사무과</u> 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u>의회사무국</u> 에서.....
제6조(관리) 공인은 <u>사무과장</u>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관리) <u>사무국장</u>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u>사무과장</u> 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u>사무국장</u> 에게.....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u>사무과장</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u>사무국장</u> 에게.....	〔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 공인의 규격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달서구의회 <u>사무과장</u> 직인 : 정부관인 규정 별표 그 직인의 규격 준용	4. <u>사무국장</u>